

영등포구의회
제21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이용주 의원 발의】



2018. 10. 2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8호로 2018년 10월 12일 이용주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규정(안 제3조~제4조)

다.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라.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18. 10. 11. ~ 10. 16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

- 안 제1조~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

-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구책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

- 안 제5조에서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예우하고 국민들에게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고
-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안 제8조에서는 안 제6조와 관련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였음.

○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가문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서 병무청장이 심사·검토 후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는 854개 가문이 선정되었고 그 중 신청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639개 가문이, 영등포구는 37개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음.

○ 본 조례안은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아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

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문제점은 없으나 병역명문가 지원사항의 실효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규칙 제정,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』

제20조(병역명문가 우대)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